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 강경숙・이해민・차규근

황운하 · 서왕진 · 박은정

이성윤 · 김영호 · 김준형

김재원 · 신장식 · 문정복

박홍배・조 국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 ·경력·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,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,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

11조의5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1조의5제3항"을 "제11조의6제3항"으로 한다.

제11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2항 및 제3항"으로, "심사방법"을 "심사방법, 서류 검증"으로 한다.

③ 임용권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등의 서류를 검증하여야한다.

제11조의5를 제11조의6으로 하고,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1조의5(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①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,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그 허위 기재가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대학의 교원으로의 임용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학위,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

하여 제1항에 따라 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의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서류 허위 기재로 임용이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대학인사위원회) ① 다음	제5조(대학인사위원회) ①
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	
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	
호의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	
다. 다만, <u>제11조의5제3항</u> 부터	<u>제11조의6제3항</u>
제5항까지, 제24조, 제24조의2,	
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	
조까지는 제외한다)에 인사위	
원회(이하 "대학인사위원회"라	
한다)를 둔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3(대학 교원의 신규채용	제11조의3(대학 교원의 신규채용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임용권자는 해당 대학의 교
	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
	이 제출한 학위증명서, 경력증
	명서 및 자격증명서 등의 서류
	를 검증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	<u>④</u> 제2항 및 제3항
임명·위촉 방법, 심사단계, <u>심</u>	
<u>사방법</u> 및 그 밖에 심사에 필	<u>심사방법, 서류 검증</u>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	

하다.

<신 설>

제11조의5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제11조의6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⑧ (생 략)

제11조의5(대학 교원 임용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) ① 임용 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 된 사람이 학위,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 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허 위 기재가 임용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 ② 대학의 교원으로의 임용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학위, 경 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 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1항에 따라 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취 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의 교 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⑧ (현 행 제11조의5와 같음)